

202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 1권 2차 정오표 [2026.4.2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과목 법령 개정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전	개정 후
<p>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0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5.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p>	<p>제10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5.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p>
<p>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 ⑤ (생략)</p> <p>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p>	<p>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p>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개정 전	개정 후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p> <p>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p>

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 ③ (생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7(과징금 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

제16조의7(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질문 및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에너지법」

개정 전	개정 후
<p>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생략)</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p>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

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한 판매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 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 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것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것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
 행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
 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생략)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
 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
 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
 원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
 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
 행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
 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
 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
 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
 원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
 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
 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⑧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⑨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개선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5조의2(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불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⑧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⑨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개선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5조의2(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불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36조(폐열의 이용) ①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36조(폐열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이나 세관(洗罐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때위를 벗겨 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이나 세관(洗罐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때위를 벗겨 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생략)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직무범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직무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47조(사무소) ① (생략)

②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회계 등) ① **삭 제**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47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회계 등) ① **삭 제**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4.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6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분
다.

제78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70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
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분다.

제78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
수한다.

202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 1권 1차 정오표 [2025.5.21]

[제1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6	예제문제 5번	<p>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p> <p>해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p>	<p>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p> <p>해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p>
26	예제문제 12번	<p>②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p>	<p>②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p>
78	예제문제 10번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예제문제 11번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의 각 요건과 대상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p>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각 요건과 대상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p>
79	예제문제 12번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p>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p>
82	예제문제 15번	<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틀린 것은?</p> <p>해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항목(1차 에너지 소요량)</p>	<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틀린 것은?</p> <p>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항목(1차 에너지 소요량)</p>
	(6) 건축물 대장의~	<p>(6) 건축물 대장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재</p>	<p>(6) 건축물 대장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재</p>
83	3. 점검항목	<p>·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법 제17조)</p>	<p>·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법 제17조)</p>
	예제문제 16번	<p>④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p>	<p>④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p>
85	(1)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p>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p>	<p>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p>
	예제문제 17번	<p>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p>	<p>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p>
86	(2) 건축물의 인증취소	<p>①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p>	<p>① 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p>

86	예제문제 18번	<p>녹색건축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p> <p>1.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녹색건축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p> <p>1. 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88	(1) 에너지평가서 공개	<p>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p>	<p>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p>
	(2) 에너지평가서의 운영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p>
91	예제문제 20번	<p>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제가 구축된 지역에~</p> <p>②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제가 구축된 지역에~</p> <p>③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제가 구축된 지역에~</p>	<p>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제가 구축된 지역에~</p> <p>②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제가 구축된 지역에~</p> <p>③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제가 구축된 지역에~</p>
96	예제문제 3번	<p>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과 인증 기관 취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p>	<p>④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과 인증 기관 취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p>
100	(3)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별 지정요건	<p>② 녹색건축의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수행의 경우</p>	<p>② 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수행의 경우</p>
101	예제문제 5번	<p>녹색건축의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녹색건축센터 지정요건 중 보유하여야 할 전문인력 수로 적합한 것은?</p> <p>1) 녹색건축의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업무수행의 경우</p>	<p>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녹색건축센터 지정요건 중 보유하여야 할 전문인력 수로 적합한 것은?</p> <p>1) 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수행의 경우</p>
	(4) 녹색건축센터 지정절차	<p>5.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5.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p>
102	예제문제 7번	<p>④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p>	<p>④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p>
109	예제문제 10번	<p>③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관의 장</p>	<p>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장</p>
	3) 시범사업의 적법성 검토	<p>3. 녹색건축의 인증(법 제16조⑦)</p> <p>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법 제17조④)</p>	<p>3. 녹색건축의 인증(법 제16조⑥)</p> <p>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법 제17조⑤)</p>

110	예제문제 11번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법 제17조④) 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법 제17조④)	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법 제17조④)
131	예제문제 5번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될 수 없다.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가 될 수 없다.
139	요점·청문	1.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법 제9조) 2.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인증의 취소(법 제20조)	1.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법 제9조) 2. 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인증의 취소(법 제20조)
140	예제문제 1번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해설 청문사유 1.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인증의 취소	④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해설 청문사유 1.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인증의 취소
143	(1)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	3.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녹색건축의 인증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녹색건축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2편 건축법]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183	예제문제 31번	③ 건축물의 외벽중 단열재의 중심선	③ 건축물의 외벽중 단열재의 중심선
353	예제문제 12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세대의 신축공동주택에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세대의 신축공동주택에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3편 에너지법]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402	예제문제 7번	① 지역에너지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① 지역에너지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439	예제문제 30번	① “석유환산톤”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⁷ kcal를 말한다.	① “석유환산톤”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⁸ kcal를 말한다.
461	(1) 용어	③ ~시설에 대한 에너지이용실태와 손실 요인 등을 파악하여 ~	③ ~시설에 대한 에너지이용실태와 손실 요인 등을 파악하여 ~

[제4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486	예제문제 10번	③ 공공사업주관자가 설치 하여 고 하는 연간 1만 toe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③ 공공사업주관자가 설치 하 려고 하는 연간 1만 toe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552	예제문제 30번	② “전기사업법”에 다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toe인 사업장	② “전기사업법”에 따 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toe인 사업장
564	예제문제 44번	②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천7백 toe 의 인 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해당된다. ③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8만 toe 의 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연간 3천 toe 의 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천7백 toe인 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해당된다. ③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8만 toe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연간 3천 toe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90	예제문제 4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다른 열사용기자재의 설치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 른 열사용기자재의 설치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622	예제문제 3번	② 에너지효율등급건축물 의 인증취소	② 제로에너지건축물 의 인증취소

[제5편 녹색건축물 관계법규 하위규정 등]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650	예제문제 7번	③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③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657	[3]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증받아야 한다.	삭제
659	예제문제 9번	③ 성능개선 이후에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공공건축물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여야 한다.
665~667	예제문제 번호수정	예제문제 24~30	예제문제 10~16
680~683	예제문제 번호수정	예제문제 31~41	예제문제 17~27

683	예제문제 26번	④ <u>최저 소비효율 달성률은 측정한 소비효율과 최저 소비효율 기준의 비를 말한다.</u>	④ <u>고효율변압기는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변압기를 말한다.</u>
	예제문제 27번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u>3년</u> 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u>3년</u>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u>4년</u> 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u>4년</u>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692~694	예제문제 번호수정	예제문제 42~46	예제문제 28~32
698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①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 (<u>신축중인</u> ~ ②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 <u>센터</u> 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①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 (<u>신축 중인</u> ~ ②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 <u>센터</u> 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702~705	예제문제 번호수정	예제문제 47~55	예제문제 33~41

[과년도 출제문제]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730	20번	③ <u>에너지성능 개선 전후대비</u>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여야 한다.	③ <u>에너지성능 개선 전후대비</u>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여야 한다.
732	5번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u>건축물에너지평가사</u> 될 수 없다.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u>건축물에너지평가사</u> 가 될 수 없다.
739	5번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u>3년</u> 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u>3년</u>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u>4년</u> 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u>4년</u>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751	7번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u>표시</u>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53	13번	④ <u>최저 소비효율 달성률은 측정한 소비효율과 최저 소비효율 기준의 비를 말한다.</u>	④ <u>고효율변압기는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변압기를 말한다.</u>

755	2번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의 각 요건과 대상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각 요건과 대상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3번	<p>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초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p> <p>해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p>	<p>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p> <p>해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p>
757	8번	③ 공공사업주관자가 설치 하여고 하는 연간 1만 토티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③ 공공사업주관자가 설치 하려고 하는 연간 1만 토티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762	8번	② “전기사업법”에 다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토티인 사업장	② “전기사업법”에 다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토티인 사업장
763	13번	① “석유환산톤”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6 kcal를 말한다.	① “석유환산톤”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b kcal를 말한다.
767	5번	②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②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768	6번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772	19번	1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세대의 신축공동주택에 기계 확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세대의 신축공동주택에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